화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1시간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긴급을 요한다고"를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로 하고,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토요일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중 "종사하는 근무시간을"을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를 "공무원을 휴무하게"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중 "제19조제4항의"를 "제19조제5항의"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외출은 누계 8시간을"을 "외출의 누계 8시간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180일의"를 연180일의"로 한다.

제22조제4호중 "건강검진"을 "건강진단"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게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6조중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를 "제26조의1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2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5장 "정치활동"을 "정치운동"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1시간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②---------- ----------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③토요일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 --------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①군수는 토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①----------

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을 휴무하게----------
제18조(연가일수) ①(생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1호와 같음)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② (생략)	제20조(연가일수에의공제) ①-②(현행과같음)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③----------외출의 누계 8시간은----------
제21조(병가) ①(생략)	제21조(병가) ①(생략)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용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연180일의----------
제22조(공가) 1-4. (생략)	제22조(공가) 1-4.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때	5. ----------건강진단----------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군수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게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6조(겸직허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겸직허가) ---제26조의1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
<신설>	제26조의1(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5장 정치활동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생략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신설>	제5장 정치운동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 제27조의1(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